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경 과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 제 1985 호

다. 제출일자 : 2017. 8. 14.

라. 회부일자 : 2017. 8. 16.

2. 제안이유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까지임에 따라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변경(안 제2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없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없음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갈등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국·국 협의 사항: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17. 6. 22. ~ 7. 12.) 결과: 제출의견 없음
- (2) 신 · 구조문 대비표: 별도 붙임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기한만료 시점이 다가옴 에 따라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시도(市道)의 굴착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 후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굴착복구비, 감리비, 도로굴착복 구시스템 유지운영비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기금의 결산 내역을 보면, 평균 231억 수준의 수입과 지출을 하고 있으며, 평균 163억 수준의 예치금을 유지하고 있어 매년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표]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지현황(2012~2016)

	-	그 분	2012년도 (결산)	2013년도 (결산)	2014년도 (결산)	2015년도 (결산)	2016년도 (결산)	평균
	수 입 액		23,286	20,835	22,675	25,709	23,235	23,148
2	원인자부담금		22,523	20,248	22,143	25,240	22,828	
	이자수입 등		763	587	532	469	407	
	지 출 액		24,496	19,671	23,313	24,268	24,029	23,155
	구	소 계	23,446	19,086	22,953	23,818	23,777	
<u> </u>	타	직접복구비	18,650	14,238	18,238	17,717	17,450	
	그리하다 보다 나라이	사후정비비	4,291	4,187	4,167	5,553	5,568	
	1	감리비및부대비	505	661	548	548	759	
	시	스템 유지운용 등	1,050	585	360	450	252	
	증 감		감 1,210	증 1,164	감 638	증 1,441	감 794	
	예치금		15,298	16,462	15,824	17,265	16,471	16,264

○ 이에 서울시는 존속기한 만료('17.12.31.)를 앞두고 「지방자 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 을 연장하기 위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¹)를 거쳐 금 회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 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계획시설의 신설 및 개·보수 등의 도시재생에도 도로굴착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작업이고 도로안전의 위협요소인 포트홀(pot-hole)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도로굴착복구기금의 고유한 목적(굴착 복구 및 사후관리) 달성을 지속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 사료됨.

^{1) 2017}년 제2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재정관리담당관-6999, 2017.6.16.) '기금 일몰제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안)' 원안가결

- 참고로, 현행 조례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²⁾는 2012년 조례개정 시 법 제4조에 의거해 신설된 것으로 당시 서울시는 존속기한이 없는 기금들을 대상으로 존속기한을 설치하는 조례 8건을 일괄 개정한 바 있으며, 추가적으로 조례 3건이 별도로 개정되어 총 11건의 기금이 일몰제 형식으로 운용되고 있음.
- 이 중 존속기한 만료('17.12.31.)를 앞둔 8건의 개정안이 이번 제276회 임시회에 제출된 상황임([표] 참조).

[표] 존속기한 연장 건

연번	주관부서	안건	현행 조례상 존속 기한	현황
1	대외협력 담당관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017.12.31.	개정안 제출 (2017.8.14.)
2	예산담당관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12.31.	개정안 제출 (2017.8.14.)
3	재정담당관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12.31.	개정안 제출 (2017.8.14.)
4	소상공인 지원과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12.31.	개정안 제출 (2017.8.14.)
5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12.31.	개정안 제출 (2017.8.14.)
6	여성가족 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12.31.	개정안 제출 (2017.8.14.)
7	도로관리과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12.31.	개정안 제출 (2017.8.14.)
8	체육정책과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12.31.	개정안 제출 (2017.8.18.)
9	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022.12.31.	개정 완료 (2017.7.13.)
10	사회적경제 담당관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021.12.31.	개정 완료 (2016.9.29.)
11	국제교류 담당관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018.12.31.	개정 예정

²⁾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